

제266회(정례회) 제3차본회의
2007년 12월 21일 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12. 21.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1월 12일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26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12.1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이석표)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의 개정('07.5.)에 따라 우리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
- 나.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며,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(안 제2조)
- 다.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·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·팀장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함(안 제2조)
- 라. 협의회는 기능은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함(안 제3조)
- 마.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과 동법 시행령 개정¹⁾에 따라 ‘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’ 설치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,
- 전국적으로 현재 5개 광역시²⁾는 조례가 제정되었고, 기타

1)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9조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 신설 : 2007. 1. 3
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(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신설 : 2007. 4. 12

2) 2007년 12월 현재 부산, 인천, 대구, 광주, 울산광역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.

광역자치단체도 입법예고, 의회심사 등 조례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.

- 지방자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,
- 상위법령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.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11월 12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(안 제2조)
-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·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·팀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함(안 제2조)
-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함(안 제3조)
-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·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담당 과·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
2. 시·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·협조 사항
3. 기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
제8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협의회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

제19조 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(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·도 관할 구역 안의 시·군 및 자치구의 시장·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·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제35조 (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 및 시·도(시·도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장급 공무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
2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·협조 사항
3. 국가의 정책추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
4.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